

# 건신예술치료연구소 운영 규정

제정 2017년 8월 24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94조의 ⑬에 규정된 건신예술치료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직무)**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연구소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수립
- ②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문화, 교육, 재활과 관련한 임상현장의 외부사업을 추진
- ③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의 통합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적인 모듈을 개발하여 예술치료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
- ④ 재학생의 임상, 관찰 등 다양한 실습 및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며,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의 교육자, 전문가들을 재교육하여 치료적 도구로서의 예술을 적용
- ⑤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 관련 자료들을 출판하고 보급
- ⑥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의 국제교류를 활성화

**제3조(조직)**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신예술치료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.

**제5조(재정)** 연구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자체조달(학술연구비 수입금, 기부금, 기타 보조금)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교 교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**제6조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
**제7조(보칙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 규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